

일반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 - 제출 방법

제출 방법	2026.08.17(월) ~ 2026.08.21(금), 5일간
제출 장소	'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'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)

- 구비서류(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24 이후 발급분만 가능)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 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 - 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 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- ※ 주택공급 신청 시, 제출서류 명확화(제23조 제2항 및 제3항)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(일정기간 거주 증명)이 필요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청약자	•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" 발급
	○		신분증	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
	○		인감도장	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)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(가점제의 경우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•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임)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※ 기록 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출입국 기록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발급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
		○	복무확인서	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신청 시
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•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	
해와 근무자 (단신 부임)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(계속하여 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→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(※아래 서류 모두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/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신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•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•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
		○	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	•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※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, 분리된 배우자(세대주)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
○		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* (청약홀) 청약홀 >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(청약통장 가입은행) 창구 방문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		
○		당첨사실 확인서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* (청약홀) 청약홀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		
추가 서류 (가점제)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직계존속	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당첨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)
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직계비속	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해외체류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•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.				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위임장		청약자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※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• "소형·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급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전세사기 피해자 제출서류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경매 : 매각허가결정 / 공매 : 매각결정통지서 등) •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 경·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)

기관추천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제출 방법	2026.08.17(월) ~ 2026.08.21(금), 5일간
제출 장소	'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'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)

■ 구비서류(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24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- 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택공급 신청 시, 제출서류 명확화(제23조 제2항 및 제3항)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(일정기간 거주 증명)이 필요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청약자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" 발급
	○		신분증	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
	○		인감도장	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청약통장순위확인서		•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전체"로 발급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※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• "소형·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전세사기 피해자 제출서류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경매 : 매각허가결정 / 공매 : 매각결정통지서 등) •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 경·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)

다자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제출 방법	2026.08.17(월) ~ 2026.08.21(금), 5일간
제출 장소	'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'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)

■ 구비서류(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24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- 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택공급 신청 시, 제출서류 명확화(제23조 제2항 및 제3항)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(일정기간 거주 증명)이 필요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청약자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" 발급
	○		신분증	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
	○		인감도장		·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
	○		청약통장잔위확인서		·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
	○		복무확인서	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기준주택 처분조건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전체"로 발급
	○		기준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본인	· 출산특례를 적용한 세대 중 기준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대상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청약자	· 성평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다자녀 가구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청약자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임양관계증명서		· 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·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(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3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·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				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· "소형-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경매 : 매각허가결정 / 공매 : 매각결정통지서 등) ·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 경·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)

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제출 방법	2026.08.17(월) ~ 2026.08.21(금), 5일간
제출 장소	'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'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)

■ 구비서류(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24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- 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택공급 신청 시, 제출서류 명확화(제23조 제2항 및 제3항)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(일정기간 거주 증명)이 필요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청약자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" 발급
	○		신분증	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
	○		인감도장		·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
	○		청약통장잔위확인서		·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
	○		복무확인서	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기준주택 처분조건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전체"로 발급
	○		기준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본인	· 출산특례를 적용한 세대 중 기준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대상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청약자 및 만9세 이상 세대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)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
	○		소득증빙서류	만9세 이상 세대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
신혼 부부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청약자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제출,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증명서		· 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○		부동산 소유현황	청약자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※ 발급처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(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) ※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·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				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※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· "소형·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전세시기 피해자 제출서류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경매 : 매각허가결정 / 공매 : 매각절정통지서 등) ·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 경·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)

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[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]

구분	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	발급처
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	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, ② 등기소(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)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
	추가 해당자 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)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) (서울시 : ETAX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(서울시 외 : 위택스 > 지방 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)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④ 농지대장, 축산업 허가증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(「농지법」 및 「초지법」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)	①,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, 서울시외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, 해당 축산과, 토지이음
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	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※ [조회 명의인] "신청하신 성명(명칭), (주인)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."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, 정부24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

■ 소득증빙 제출서류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
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구분	소득 입증 제출 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(이하, 같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※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) ※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(직인날인)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 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 인 자의 전년도(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)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, 본인의 근로(연봉)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	①, ② 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 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 날인)	①, ② 해당 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, 팩스 불가) ② 위촉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) 또는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종합소득세 미신고자)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③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, 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원본)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※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,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,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재무제표	① 세무서, 등기소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직인 날인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	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행정복지센터 등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해당 직장 날인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※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(해촉)증명서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②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제출 방법	2026.08.17(월) ~ 2026.08.21(금), 5일간
제출 장소	'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'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)

■ 구비서류(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24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- 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택공급 신청 시, 제출서류 명확화제(23조 제2항 및 제3항)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(일정기간 거주 증명)이 필요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" 발급
	○		신분증	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
	○		청약통장잔위화인서		·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
	○		복구확인서	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기준주택 처분조건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내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전체"로 발급
	○		기준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본인	· 출산특례를 적용한 세대 중 기준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대상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노부모 부양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·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·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직계존속	·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
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직계비속	·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				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※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· "소형·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전세사기 피해자 제출서류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경매 : 매각허가결정 / 공매 : 매각절정통지서 등) ·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 경·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)

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제출 방법	2026.08.17(월) ~ 2026.08.21(금), 5일간
제출 장소	'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'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)

■ 구비서류(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24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- 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택공급 신청 시, 제출서류 명확화(제23조 제2항 및 제3항)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(일정기간 거주 증명)이 필요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" 발급
	○		신분증	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
	○		청약통장잔위확인서		·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
	○		복무확인서	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생애 최초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전체"로 발급
	○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청약자	·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)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
	○		소득증빙서류		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
	○		부동산 소유현황	청약자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※ 발급처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(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) ※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청약자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제출,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증명서		· 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·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				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· "소형·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사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경매 : 매각허가결정 / 공매 : 매각결정통지서 등) ·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 경·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)

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[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]

구분	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	발급처
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	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, ② 등기소(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)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
	추가 해당자 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)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) (서울시 : ETAX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의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(서울시 외 : 위택스 > 지방 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)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④ 농지대장, 축산업 허가증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(『농지법』 및 『초지법』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)	①,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, 서울시외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, 해당 축산과, 토지이용
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	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※ [조회 명의인] "신청하신 성명(명칭), (주민)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."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, 정부24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

구분	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	발급처
자격입증 기본서류	근로자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 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세무서 ②, ③ 해당 직장 및 세무서
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

■ 소득증빙 제출서류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
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구분	소득 입증 제출 서류	발급처
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(이하, 같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※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 ※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(직인날인)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
	근로자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, ② 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	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③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, 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	① 세무서, 등기소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직인 날인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행정복지센터 등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해당 직장 날인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※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: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(해촉)증명서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경보주택에 비치) ②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	① 경보주택 비치 ② 세무서

신생아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제출 방법	2026.08.17(월) ~ 2026.08.21(금), 5일간
제출 장소	'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'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)

■ 구비서류(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24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- 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택공급 신청 시, 제출서류 명확화(제23조 제2항 및 제3항)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(일정기간 거주 증명)이 필요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" 발급
	○		신분증	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
	○		청약통장잔위확인서		·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
	○		복무확인서	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기준주택 처분조건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전체"로 발급
	○		기준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본인	· 출산특례를 적용한 세대 중 기준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대상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)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
	○		소득증빙서류	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)
신생아	○		부동산 소유현황	청약자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※ 발급처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(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) ※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·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※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청약자 또는 배우자	·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) 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○		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·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·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				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 / 대리인 발급용 불가)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전 발급분에 한함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※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· "소형-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전세사기 피해자 제출서류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경매 : 매각허가결정 / 공매 : 매각결정통지서 등) ·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 경·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)